

대한장애인배구협회

2022년 후보선수(선수) 선발 재공고

2022. 07. 13.(수) 대한장애인배구협회

□ 관련근거

- 「대한장애인배구협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6조, 제10조」
- 「대한장애인배구협회 선수·지도자·체육동호인·심판 등록 규정 제16조, 제27조」

□ 모집구분

모집구분	모집인원	비고
선수	6명	남/여 구분없이, 총 선발인원 6명

※ 지원자의 자격요건이 미비 할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도 있음.

□ 훈련기간

- 훈련기간: 2022. 7. ~ 12.(훈련기간 100일)

□ 선발일정

구분	일정
서류접수	2022. 07. 13.(수). ~ 07. 19.(화) 12:00
1차 서류전형	2022. 07. 19.(화)
2차 최종면접	2022.07.20.(수) 예정(개별통보) (선수 선발은 감독, 코치 선발 후 최종실기로 추후 개별통보)
발표	추후 유선 통보 및 홈페이지 공지

※ 일정은 협회의 사정으로 인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.

□ 지원자격

-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.
 1. 후보선수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.
(종목별 국제연맹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사람이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각종 국제대회에 출전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.)
 2. 후보선수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사람.
(단, 선발 당시 선수로 등록되지 않은 사람은 한시적으로 대한장애인배구협회의 소

속 선수로 등록)

□ 접수방법

- 원본을 스캔하여 이메일(kovad@daum.net)로 접수
 - 면접심사 시 원본 제출, 제출된 서류는 반납 불가

□ 제출서류

- 공통서류
 1. 공고문에 첨부된 소정의 양식 등
 - 후보선수 선수 지원서 1부
 - 개인정보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
 - 성희롱·성폭력 예방교육 확인서 1부(선발 확정 후 2개월 내 제출)
 - 도핑방지 교육 확인서 1부(선발 확정 후 2개월 내 제출)

□ 결격사항

-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는 후보선수가 될 수 없다.
 1. 「국가공무원법」 제33조(결격사유)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2. 장애인체육회 또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에서 금지약물을 복용하거나, 약물사용 허용 또는 부추기는 행위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
 3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체에서 다음 각 목에 따른 사람
 - 가. 폭력, 성희롱·성매매 또는 성폭력과 관련된 비위 행위(강간·강제추행 포함)로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사람
 - 나. 승부조작, 편파판정, 국가대표 및 강화훈련 선수 선발과 관련한 불공정 행위(부정선발, 담합, 금품수수), 횡령·배임 행위로 자격정지의 징계를 받은 사람
 - 다. 가목과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
 4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5.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·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·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「형법」 제314조 및 「국민체육진흥법」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
 6. 음주운전 등과 관련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의 처벌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)
 - 가.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

사람

나. 500만원 미만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7. 도박과 관련된 행위로 형법 제246조 또는 제247조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(형이 실효된 자를 포함한다)

가. 1천만원 초과 of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나.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

8. 대한장애인배구협회(시도지부 포함)의 회장, 부회장, 전무이사의 경우 국가대표 지도자를 겸직할 수 없고, 상기 직위를 사임한 경우라도 사임 후 2년 동안은 국가대표지도자로 선발될 수 없음

9.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체육인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

□ 주의사항

1.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선수 선발을 취소함.
2. 외국어로 된 증명서의 경우 반드시 한국어로 번역 후 공증하여 제출.
3. 기타 모집 공고에 공지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장애인배구협회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결정함.